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2185 |
|------|------|

2017. 11. 2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0월 30일, 이신혜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제1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11.29)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신혜 의원)

1. 제안이유

- 농수산물식품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의 이사 구성시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 이상 초과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나.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의 이사 구성 현황과 관련 규정

-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서울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으로 공사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사 정관에서 규정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는 지방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임원의 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제7조),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 서울시장의 지정하는 2명

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농수산물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9조).

- 공사의 정관에 따르면 사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의 경우 당연직 이사와 위촉직 이사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자격과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정관 제10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비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중 도매시장 업무 담당 국장 1명, 투자기관총괄관리업무 담당 주무국장 1명 및

농림수산물식품부의 공무원 중 도매시장 담당 주무국장 1명

2. 위촉직 :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농수산물 유통 관련 분야 전문가, 공기업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사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

③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공사는 정관에 따라 현재 상임이사 2명(사장, 유통본부장), 비상임이사 7명(근로자 이사 1명 포함) 등 총 9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사회 명단은 불임자료 2 참조)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공사 이사회에 있어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 이상 초과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양성평등법」의 취지에 부합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양성평등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무를 부여하고(제20조),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제21조)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를 위하여 위원회(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를 구성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제21조 제2항)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적극적 조치(제14

조), 시정참여 확대(제15조)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편, 「양성평등법」 제21조 제2항의 위원회에 지방공기업의 이사회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의 위임없이 공사의 이사회 구성에 특정 성(性)의 비율을 6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 후단은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음.
- 다만 본 개정안은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공사의 이사회 구성에 특정 성(性)의 비율을 60%를 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

고사항으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공사의 이사 중 여성이 단 한명도 없는 등 현실적으로는 양성평등과 다소 거리가 있는 운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신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185 |
|----------|------|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30일

발 의 자 : 이신혜, 김경자(양천), 김영한,
김혜련, 문형주, 박호근, 우미경,
이순자, 이윤희, 장우윤, 조규영,
한명희 의원(12명)

1. 제안이유

농수산물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4조(이사회) ① (생략)</p> <p>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u>구성</u> 하되,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 관계를 가진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p> <p>③ ~ ⑧ (생략)</p> | <p>제1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구성</u> 하 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u>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u> -----.</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